「육아정책연구」 규정

제정 2007. 1. 12.
개정 2009. 1. 19.
2011. 4. 12.
2012. 4. 10.
2014. 12. 15.
2016. 4. 26.
2016. 8. 17.
2017. 8. 22.
2018. 4. 27.
2018. 8. 17.
2020. 8. 19.
2021. 8. 17.
2023. 7. 5.
2024. 5. 8.
2024. 6. 20.
2024. 9.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 발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학술지 발간목적) 육아정책연구의 발간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
2. 육아정책 관련 지식과 정보 교류
3. 한국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지적 기반 확보

제3조(발간횟수 및 발간일) 발간 횟수는 연간 3회로 하고 발간일은 매년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2016. 4. 26. 개정)

제4조(게재논문 편수) 1회 게재 논문 편수는 최종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 10편 내외로 한다.

제5조(논문 공모주제) 논문 공모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정책 개발, 분석 및 평가
2. 육아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3. 연구소 생산 데이터 활용 주제
4. 기타 육아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제2장 편집위원회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연구소 내·외부 편집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나 연구위원 중 소장이 지명한다.(2016. 4. 26. 개정)

제7조(편집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편집위원의 위촉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연구소 출판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자격요건에 있어 전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공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관련기관 근무자로 한다.
3. 편집위원은 연구 분야에 있어 유아교육학, 아동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육아 관련 전공으로 하며, 영문편집위원 1명을 포함한다.(2016. 4. 26. 개정)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17. 8. 22. 개정)

제8조(편집위원회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연구소 출판편집 운영세칙 또는 출판편집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 심의
2. 논문 심사
3. 게재 확정 논문 최종 검토

제9조(편집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온라인 회의도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3장 논문 접수 및 심사

제10조(논문 투고) 1. 투고 논문의 주제는 본 학술지 발간 목적에 맞아야 한다.

2.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지침”에 따른다.

제11조(논문 심사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투고논문의 「육아정책연구」 학술지 성격 부합 여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과 심사제외 논문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또는 한국영유아 교육·보육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이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고된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면제되며 면제된 1인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가” 이다. 해당 발표는 구두발표에 한한다. 단, 투고 논문은 「육아정책연구 논문 투고 지침」에 따라 작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2022년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이후, 2024년 한국영유아교육·보육패널 학술대회 이후부터 적용한다.(2024. 9. 3. 개정)
4.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는 해당 논문에서 제외한다.(2016. 8. 17. 신설)
5.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사의견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판정하며,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가‘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2014. 12. 15. 개정)
7.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논문을 수정·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8.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9.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투고자가 수정 후 다시 투고할 경우에는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한다.
10.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23. 7. 5. 개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심사 판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11. 종합판정 ‘수정 후 재심’에서, 심사위원 의견 중 게재 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 추가 심사위원 1인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추가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2023. 7. 5. 신설)
12.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후 재심사로 통과된 논문제출자가 논문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2018. 8. 17. 신설)

제11조의 2(심사 이의 제기) 투고자는 최종 종합판정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2020. 8. 19. 신설)

제12조(논문 심사기준) 게재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2024. 06. 20. 개정)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8. 논문초록의 적합성
9. 기타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4장 출판

제13조(저작권) 「육아정책연구」에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육아정책연구소로 양도되며, 논문의 저자는 정해진 양식(별첨 3)에 서명하여 제출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원고를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017. 8. 22. 개정)

제14조(학술지 공개) 출판된 학술지 전문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개인정보 및 투고자 윤리

제15조(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6조(투고자 윤리) 육아정책연구는 연구계획, 수행, 심사, 결과보고의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와 중복게재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경우 논문 철회 및 투고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 윤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의 2(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미성년자 (만 19 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논문 투고시 해당 사실을 연구윤리 준수 양식에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세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세칙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육아정책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9. 12. 1.
개정 2012. 4. 10.
개정 2016. 8. 17.
개정 2024. 5. 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육아정책연구소 학술지 「육아정책연구」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일체에 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범위

이 규정은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연구 윤리

1. 투고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 진실성을 왜곡시키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투고자와 심사위원에게 서로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서약을 의무화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5.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참조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1.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에 의해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를 활용한다.
2.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요구될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4.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변조: 연구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타인 저작물에 대한 출처 미표기, 타인 저작물에 대한 번역 후 출처 미표기, 2차 문헌 표절,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직접 인용하면서도 인용부호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 표시를 한 경우, 출처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이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경우(2016. 8. 17 개정)
   ④ 중복게재: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 활용,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를 표시한 경우, 출처표시는 했지만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⑤ 부당한 저자표시: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⑥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2.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2024. 5. 8. 신설)
   ①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여부 사전 공개' 서류를 제출한다.

③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 준수 양식에 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6조 연구 윤리위반 행위 제보(2016. 8. 17. 신설)

1. 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보는 육아정책연구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 윤리위반의 조사(2016. 8. 17. 신설)

1. 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육아정책연구 윤리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2.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 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판정한다.
4. 연구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의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관련된 사항의 의결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소명기회와 비밀보장(2016. 8. 17. 신설)

1. 연구윤리 지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는 위반 사실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연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9조 조사결과에 따른 통지(2016. 8. 17. 신설)

1.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윤리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본 학술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육아정책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및 심사 시스템]과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구윤리에 대한 위반이 확정된 연구자의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없으며, 관련기관 통보 및 향후 최소 3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투고를 제한한다.(2016. 8. 17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